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가합55403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0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가합554031 판결

전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4. 9. 1.

판결 선고 2014. 9.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0,544,538원 및 그 중 229,094,9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115,272,269원 및 그 중 각 114,547,469원에 대하여,

각 2013. 6. 19.부터 2014. 2.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2.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6,612,6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136,612,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3. 4.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135.5/37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3. 4.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2012. 5. 18. 보증기한 2013. 5. 16., 보증금액 225,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해 하나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는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3. 6. 19.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추가보증료, ③ 기타 채권의 보전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5조 제1항은 주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제8조)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통지나 독촉 없이도 보증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 3)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증원금 중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의 채권자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 또는 가산금액과 비용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그 상환범위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위 연대보증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3. 6. 19.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추가보증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금액 중 위 연대보증금액이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이 포함된다.
- 4) 2013. 4. 15.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6. 19. 229,094,938원(원금 225,000,000원 + 이자 4,094,938원)을 지급하였다.
- 5) 보증금액 2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보증채무 이행 전날인 2013. 6. 18.까지 추가보증료 366,16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083,440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2012. 9. 14.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9. 14. 접수 제813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부동산에는 당시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2012. 9. 14.자로 각 말소되었다.

2) 피고 B은 피고 E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4. 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1호로 B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135.5/370지분에 관하여 2013. 4. 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2호로 B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230,544,538원(=대위변제금 229,094,938원 + 추가보증료 366,160원 + 집행보전비용 1,083,44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29,094,93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3.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4. 2. 23.까지는 약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230,544,538원 중 각 115,272,269원[=약정 보증금액 112,500,000원 + 위 112,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이자 부분 2,047,469원(=4,094,938원 × 1/2) + {(추가보증료 366,160원 + 집행보전비용 1,083,440원) ×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약정 보증금액이 해당하는 비율 1/2}] 및 그 중 114,547,469원(=112,500,000원 + 2,047,469원)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4. 2. 23.까지는 약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증여계약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3. 4. 15. 이전인 2012. 9. 14. 체결되었으나, 2012. 5. 18.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2. 9.경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3. 4.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3. 6. 19.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채권도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9. 14. 당시 피고 B은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52,000,000원(26,000,000원 + 26,000,000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1) 115,272,269원, 총 167,272,26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시가 325,000,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시가 8,000,000원(피고 B 지분 상당액),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시가 9,000,000원(피고 B 지분 상당액), 총 342,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이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 B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D도 위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2) 피고 D의 항변 피고 D는 위 증여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아리나 에너지에 대한 250,000,000원 상당의 물품채권을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아리나 에너지에 대하여 피고 D가 주장하는 액수의 물품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 B이 이를 피고 회사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바,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결국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1, 2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6. 기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3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위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78,000,000원(330,000,000원 - 26,000,000원 - 26,000,000원)이 된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은 115,272,269원과 그 중 114,547,469원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2. 23.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9. 1.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340,349원[=9,414,860원(=114,547,469원 × 12% × 250/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1,925,489원(= 114,547,469원 × 20% × 190/365)]의 합계 136,612,618원이 된다.

3) 결국 위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36,612,618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278,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136,612,618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2012. 9. 14.자 증여계약을 136,612,6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36,612,6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 B와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3. 4. 15.로부터 6일 전인 2013. 4. 9. 체결되었으나, 2012. 5. 18.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불과 6일 후인 2013. 4.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3. 6. 19.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채권도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B의 무자력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10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4. 9. 당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15,272,26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 시가 8,000,000원(피고 B 지분 상당액),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시가 9,000,000원(피고 B 지분 상당액), 총 17,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 B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이 2013. 4. 9.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2, 3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B 및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 E의 항변 피고 E는 피고 B, C와 지인 관계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별지 목록 2, 3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2013. 4. 9.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가 피고 회사나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그 원물반환으로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의 135.5/37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96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우라옥

판사오세영

판사주은영

별지

1) 이는 2012. 9. 14.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2013. 4.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3. 6.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